

사회 보장혜택 (Social Security Benefits)

사회 보장혜택 (Social Security Benefits)

■ 미국의 사회 보장혜택 (Social Security Benefits)에 대해서

미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하고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냈으므로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다. 우리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도 사회 보장혜택의 수혜자격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소득에 기준한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낸다. 우리가 다른 고용주를 위해 일할 경우 고용주도 우리를 위해 같은 액수의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낸다. 자영업을 할 경우에는 고용자와 고용주가 각각 내는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둘 다 내야 한다.

사회 보장국에서는 각자의 소득을 기록하기 위해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사용한다. 직장이 바뀐다 해도 같은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득기록이 유지된다.

사회 보장국에서 얼마나 돈을 받느냐는 우리의 사회 보장번호에 기록된 그 동안의 소득에 기준한다.

사회 보장국이 매년 생일 3개월 전에 우리에게 무료로 보내주는 소셜 시큐리티 명세서 (Social Security Statement)를 받아 보면 소득 내용과 함께 우리가 수혜 대상자로서 받을 수 있는 은퇴연금, 장애혜택 및 유가족 연금의 액수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다.

■ 사회 보장제도의 혜택의 종류

사회 보장 세금은 5개 부문으로 나뉘어 그 혜택이 지급된다. 즉, 은퇴연금, 불구자 수당, 가족 수당, 유가족 수당 및 메디케어이다. (SSI 혜택은 사회보장 세금에서 총당되지 않음.)

■ 은퇴연금에 대해서

1. 은퇴연금의 수혜자격

일을 하고 세금(FICA)을 내면서 우리는 “크레딧”을 벌게 되는데 이 크레딧은 장래에 사회 보장 혜택을 받는데 계산이 된다. 우리는 매년 최고 4 크레딧까지 벌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40 크레딧을 벌어야 (즉 10년간을 일을 해야) 은퇴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불구자 수당이나 유가족 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크레딧이 낮아도 됨.)

만일 귀하가 1929년 이후에 출생했다면 모두 40 크레딧이 필요하다. (1928년생은 39 크레딧, 1927년생은 38 크레딧 등...이 필요함.) 만일 우리가 은퇴연금 베니핏을 받기에 필요한 크레딧을 다 쌓기 전에 일을 중단했다라도 크레딧기록은 우리의 소셜 시큐리티 기록에 남게 되며, 나중에 다시 일을 시작하면 추후에 크레딧을 더 쌓을수 있다. 어쨌든 이 모든 크레딧이 쌓이기 전에는 은퇴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 사회 보장 혜택의 계산

우리가 받는 사회 보장혜택의 크기는 평생 근로 연도 수와 총 소득을 평균화한 다음 그 수치의 퍼센티지로 계산된다. 따라서 귀하의 소득이 많을수록 수혜금액도 많아진다. 반면에 만일 소득이 아주 없었거나 저소득인 해가 있었다면, 지속적으로 일을 했을 때보다 혜택이 적을 것이다. 저소득자들은 고소득자들보다 더 높은 혜택을 받지만,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자신의 평생 소득 평균의 약 40 퍼센트 정도의 금액을 은퇴 후에 받는다.

3. 은퇴연금

충분한 사회 보장 크레딧을 쌓은 사람에게는 은퇴 연령이 되면 혜택이 지급된다. 1938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의 정기 은퇴 연령은 65 세이다. 하지만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의 은퇴연령은 점진적으로 높아져서 1960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의 은퇴 연령은 67 세가 된다. (도표 참조)

Age to Receive Full Social Security Benefits

1937 or earlier	65
1938	65 and 2 month
1939	65 and 4 month
1940	65 and 6 month
1941	65 and 8 month
1942	65 and 10 month
1943-1954	66
1955	66 and 2 month
1956	66 and 4 month
1957	66 and 6 month
1958	66 and 8 month
1959	66 and 10 month
1960 and later	67



은퇴연금 액수는 연금을 언제부터 받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사람들은 62 세가 되면 조기은퇴가 가능하나 그때 받는 액수는 정상적인 은퇴시보다 적어진다. 예를 들어 우리의 정기 은퇴연령이 65 세 2 개월이라면(1928 년생) 62 세에 은퇴를 할 경우 우리의 연금은 정기 은퇴 시 받게 될 액수보다 20.8%가 줄어들 것이고, 63 세에 은퇴를 할 경우는 14.4%, 64 세 은퇴 시에는 7.8%만큼 줄어든다. 반면에 정기 은퇴연령보다 은퇴를 지연하는 사람은 최대한 70 세가 될 때까지 혜택을 받지 않는 기간 동안 매월 특별 크레딧을 받게 된다.

■ 신체장애 혜택 (Disability Benefits)

충분한 사회보장 크레딧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위중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일년 이상을 실질적으로 일을 못하고 있거나, 사망에 이르게 될 병에 걸리면 연령에 관계없이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 달에 \$740 이상의 소득이 있을 때는 일을 하고 있다고 간주한다. 신체장애 프로그램에는 점차적인 재활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일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혜택과 건강보험이 주어지는 등 장려 책이 포함되어 있다.

■ 가족부양 혜택

우리가 은퇴나 불구자 수당을 받을 자격 요건이 되면 가족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62 세 이상이거나 또는 62 세 미만으로서 16 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18 세 이하의 미혼 자녀, 또는 19 세인 경우 아직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또는 18 세 이상으로 신체장애가 있는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만일 이혼을 한 상태라면, 그 전 배우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유가족에 대한 혜택

우리가 사망할 시에 충분한 사회보장 크레딧이 쌓여 있다면 남은 가족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격 대상 가족은, 60 세 이상의 미망인(신체장애인 경우에는 50 세 이상)이며 16 세 미만의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부모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없다. 또한 18 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과 19 세 미만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녀, 또는 18 세 이상의 신체장애 자녀, 또는 부모를 부양하고 있었으면 당신의 부모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사망하면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들에게 특별 사망금(\$255)이 한차례 지급된다. 만일 이혼을 한 상태라면, 그 전 배우자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한가지 영두에 돌 것은 위에 설명한 사회보장 혜택들은 우리가 은퇴할 때, 또는 불구자가 되거나 사망 시에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유일한 소득원이 아니라 개인의 은퇴연금, 저축, 투자 등에서 나오는 소득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이다.

■ 메디케어 메디케어

메디케어 메디케어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있다. 하나는 병원보험(“Part A”라고 부르기도 함)이고 또 하나는 의료보험(“Part B”라고 부르기도 함)이다. 일반적으로 65 세 이상인 사람이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메디케어에 가입할 자격이 있다. 또한 불구자 수당을 2 년 동안 받고 있는 사람들도 메디케어에 가입할 자격이 있다. 그 밖의 사람들은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Part A 는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소셜 시큐리티 세금의 일부로 충당되고 있으며, 입원비와 전문치료를 요구하는 양로 비용 및 그 밖의 의료 서비스를 지불하는데 도움을 준다. Part B 는 가입한 사람이 내는 월 불입금과 일반 세입으로 충당된다. 이 부문은 의사 진료비, 외래환자 방문 비용 및 그 밖의 의료 서비스와 의료용품을 지불하는데 도움을 준다.

■ 생활 보조금(SSI)

SSI (Social Security Supplemental Income)는 저소득자와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생활 보조금으로 65 세 이상이거나 신체장애자에게 지급된다. 성인들은 물론 어린이들도 SSI 신체장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SI란 그 이름이 말해주듯이 거주지에 따라 그 몰가 수준에 맞게 당신의 소득을 보조해준다. 연방정부가 기본금을 부담하며 각 주는 연방 기본 금액에 일정한 액수를 추가하여 지급한다. SSI 혜택은 사회 보장기금에서 지급되지 않고 또한 과거의 소득을 기준하지 않는다. 그 대신 SSI 혜택은 일반 세입으로 충당하며 노년층과 신체장애자에게 최저의 월 소득을 보장하고 있다.

소셜 시큐리티 혜택 신청은 어느 사회보장 민원 사무소에서나 가능하다. 가장 쉬운 신청 방법은 사회 보장국 무료 전화번호 1-800 -772-1213 에 전화하여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는 것이다.

위에 설명한 소셜 시큐리티 혜택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더 자세한 정보들 또는 기타의 사회 보장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사회 보장국 웹사이트인 <http://www.ssa.gov/>을 방문하면 얻을 수 있다. 이곳에서 여러 종류의 간행물 (publications) 및 양식 (forms) 을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은퇴계획을 위한 Retirement Planner 및 다른 소셜 시큐리티 프로그램의 수혜자격을 알아볼 수 있는 Benefits Planner 도 사용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의 상속 절차와 상속계획 (Estate Planning)

본 란은 상속과 관련된 법률, 세법과 상속계획에 대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개인의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상속 전문 변호사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기 바란다. 도움말을 주신 그레이스 김 변호사에게 감사를 드린다.

상속계획 (Estate Planning)이란 본인의 재산을 사망 시 본인의 의사대로 가족이나 친지, 단체에게 상속하는데 있어, 현행 법(상속법 등)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면서 현행 세법에서 가장 세금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등)을 적게 내는 방법을 계획하고 문서화하는 것이다.

상속계획은 본인의 상속에 대한 의사와 가족구성원 그리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상황 파악에서부터 시작된다. 또한, 현 재산을 어떻게 소유하고 있는냐에 따라 사망시 상속재산이 달리 상속된다. 따라서 상속계획을 제대로 세우려면, 먼저 캘리포니아 주에서의 상속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상속계획 (1)

■ 법원 유언검증 절차 (Probate Process)를 피할 수 있는 방법

프로베이트 를 거치게 되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많은 노력과 시간과 비용이 든다. 따라서, 가능한 최대한 상속절차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상속계획에서 모색하게 된다.

재산의 성격과 소유형태에 따라 상속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재산(Non-Probate Assets)이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남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에 흔히 사용하는 방법으로 공동명의 (Joint Tenants 또는 Joint Account)로 되어 있는 재산이다. 공동명의자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살아남은 공동명의자가 법에 의하여 모두 소유하게 되는 잔존자 취득 권 (Right of Survivorship)이 있기 때문이다.

부부인 경우에 흔히 사용하고 있는데, 주택이나 은행계좌 등을 부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그렇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만약 부부 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다면, 잔존자취득 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 상속절차를 거쳐 자녀 등 상속인에게 유산이 상속되게 된다.

Probate Process 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Living Trust (생전신탁)를 설정하여 살아 생전에 미리 재산을 Trust (신탁)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다.

■ Trust (信託 신탁)란?

Living Trust (생전신탁)을 설명하기 전에 Trust (신탁)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하고자 한다. Trust 는 미국에서 재산을 소유하는 한 방법이다.

Trust 를 설정하는 Trustor (신탁인: Settlor 또는 Grantor 라고도 함)가 Trust (신탁)을 관리하도록 위임을 받은 Trustee (신탁관리인, 피신탁인) 와 특별한 신임관계로 맺은 신탁 문서 (Trust Instrument)에 의한 법률적 관계를 말한다.

이 경우, 신탁이 재산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며, 신탁관리인(Trustee)은 신탁인 (Trustor)로부터 양도받은 신탁재산 (Trust Property)의 법적 관리인이 되어, Trust (신탁) 규정에 명시된 목적이나 신탁재산의 경제적 이익을 받도록 명시된 수혜자 (Beneficiary)를 위하여 그 재산을 관리 하고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있게 된다.

Trust (신탁)을 관리함에 있어 Trust Law (신탁법) 의 적용을 받게 된다.

■ Trust (信託 신탁)의 종류

상속계획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Trust (신탁)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이 있다. Trustor (신탁인)가 생전에 아무때나 Trust (신탁)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취소가능신탁(Revocable Trust) 과 일단 설정된 트러스트 내용을 Trustor (신탁인)가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취소불가신탁 (Irrevocable Trust)이 있다.

또한, Trustor 가 살아 생전에 작성한 Living Trust (生前信託 생전신탁)와 유언장 등에 의하여 사망 후에 설정되는 사후신탁 (死後信託 Testamentary Trust)이 있다.

■ Living Trust (생전신탁)

원래는 Revocable Living Trust (취소가능생전신탁 또는 Inter Vivos Trust 라고도 함) 라고 부르나, 보통 줄여서 Living Trust (생전신탁)이라 칭한다.

일반적으로, 상속계획에서 사용하는 Living Trust 는 다음과 같은 내용과 순서로 진행되게 된다.

1. 살아 生前에 (During Lifetime)

신탁인 (Trustor 또는 Settlor, Grantor 라고도 함)이 살아생전에 Trust (신탁)를 먼저 설정한 후에, 본인의 재산(부동산, 동산, 사업체 또는 증권 등)을 살아 생전에 Trust (신탁)로 명의 변경을 해놓는다.

거의 모든 경우, 신탁인(Trustor)과 신탁 관리인(Trustee)이 동일인 경우가 많다. 소유권만 신탁으로 변경하고, 사실상 자기의 재산을 자기가 살아 생전에 직접 관리한다.

또한, 신탁인 (Trustor)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마음대로 신탁내용을 변경 하거나 취소할 수도 있다.

2. 살았지만, 재산을 직접 관리 할 수 없을 때 (Upon Incapacity)

신탁인 (Trustor)이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건강상 이유로, Trust (신탁)에서 명시한 기준에 따라 (예로, 2 의사의 진단서에 의한다면지), 직접 신탁재산을 관리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미 지정된 후임신탁관리인(Successor Trustee)이 수혜자 (Beneficiary)인 신탁인(Trustor) 를 위하여 관리하게 된다.

3. 死亡후에 (Upon Death)

신탁인(Trustor)이 사망한 후에는 Living Trust (생전신탁)는 취소할 수 없는 신탁 (Irrevocable Trust)으로 변하게 된다.

신탁 (Trust) 에서 이미 지정된 후임신탁관리인(Successor Trustee)이 Trust (신탁) 규정에 따라 Trust (신탁) 재산을 관리하거나, 또는 지정된 수혜자 (Beneficiary) 에게 분배하게 된다.

Trust 규정에 따라, 재산이 수혜자 개인에게 직접 분배되거나 또는 수혜자의 상황에 알맞게 여러 가지 조건을 명시한 종속신탁 (Sub-Trusts) 으로 분배 되게 할 수도 있다.

물론, 신탁관리인이 수혜자 (Beneficiary)의 나이, 재산 관리 능력, 상속세의 납부등등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상황을 대비하여, 수혜자에게 최대의 그리고 최선의 혜택이 가도록 종속신탁(Sub-Trusts)규정을 정하게 된다.

Living Trust 로 명의가 변경된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에 의한 재산 양도로 간주되므로, Probate (유언검증절차)라는 상속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Living Trust 가 있다하더라도, Trust 로 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재산은 Probate 를 거쳐야 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재산상에 변동이 있을 때 (예로, 주택이나 부동산 등을 사고 팔 때) 마다, Living Trust 로 재산의 명의를 반드시 변경시킬 필요가 있다.

상기한 Living Trust 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의 도표와 같다.

Living Trust (생전신탁)의 도표

1) 살아生前에 (During Lifetime)

명의 변경이 가능한 재산	명의 변경이 불가능한 재산
부동산(주택등), 동산(은행구좌 증원등)	동산(보석등)
사업체(지분, 주식등), 기타 재산 (IRA 등)	미래 배상금 등

Revocable Living Trust 트러스트로 명의가 변경된 재산 Trustor 가 Trustee 로서 관리함
--

Trustor (신탁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마음대로 재산이나 신탁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된다.

2) 재산을 직접 관리 할 수 없을 때 (Upon Incapacity)

Revocable Living Trust Successor Trustee 가 수혜자인 Trustor 위하여 관리함

3) 사망 후에 (Upon Death)

Trust Becomes Irrevocable (Not subject to Probate) 신탁재산이 신탁규정에 따라 Successor Trustee 에 의하여 수혜자에게 분배되거나 Sub-Trusts 로 양도됨.

수혜자에게 직접 분배 (To Beneficiary Outright)
--

또는

A Trust Marital Trust 시민권 배우자 무제한 공제	B Trust Family Trust 자녀들 상속세 공제액 (\$1.5M)
--	---

4. Living Trust (생전신탁) 사용의 혜택

상속계획에서 Living Trust 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게 된다.

- Living Trust 로 명의를 변경한 재산은 사망 시 법원을 거쳐야 되는 Probate 를 피할 수 있어, 상속절차로 인한 많은 경비를 줄일 수 있다.
- Probate 를 피할 수 있어, 상속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다.
- 단순히 유언장만 있는 것보다는 상속인들 사이에서 문제 삼을 일등 분쟁(Contest, Challenge) 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 Probate 에서 유언장이 공개되는 것과는 달리 Probate 를 피하므로 그 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지켜질 수 있다.
- 재산의 복잡성과 변호사마다 Living Trust (생전신탁)를 작성하는데 드는 변호사 수임료는 다르지만, Probate 에 들어가는 변호사 수임료와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훨씬 경제적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Living Trust 를 설정하여 가지고 있지만, 귀찮고 시간과 비용이 들어 Trust 로 명의 변경을 하지 않거나 나중에 미루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 경우, 사망 시에 앞에서 열거한 혜택을 볼 수 없게 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 포괄 유언장 (Pour-Over Will)

Living Trust 를 작성한 신탁인 (Trustor)이 사망하였을 때, Trust (신탁)로 명의를 변경하지 못한 재산이 있게 된다. 살아 생전에 미루다가 미처 Trust 로 명의 변경을 하지 못한 재산과 명의 변경을 할 수 없는 동산 (보석, 가재도구 등) 또는 고인이 사망 시 받을 지도 모르는 보상금 등등이 이에 속한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포괄적인 유언장(Pour-Over Will)을 작성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Trust 로 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모든 유산 (Estates)을 유언자의 Living Trust 자체로 상속시키겠다고 포괄유언장에서 명시하게 된다.

따라서, 유언장에서 언급된 유산은 Probate Process 를 거치면서 Trust 의 재산이 되어, 기존에 명의가 변경된 신탁재산과 함께 모든 재산이 Trust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분배될 수 있게 된다.

특히, 상속인이 미성년(18 세 미만)인 경우, 유언장에서 Guardian (후견인)을 정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상속계획 (2)

■ 상속세 (Estate Tax)를 줄이는 방법

고인이 미국시민권 자나 또는 미국거주자 (Resident)이면 2004 년도에는 1 백 5 십만 불까지 상속세 없이 상속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고인이 비 거주 외국인 (Nonresident Alien)이면 미국에서 소유한 재산중 6 만 불까지만 상속세 없이 상속을 줄 수 있다.

또한, 고인이 사망 시 결혼한 경우, 상속을 받는 배우자 (Surviving Spouse)가 미국시민권 자이면 상속액이 얼마가 되든 무제한으로 상속세 없이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무제한 결혼공제 (Unlimited Marital Deduction)라 한다. 그러나 배우자가 비시민권 자이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무제한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상속세법이 신분에 따라 달리 적용됨을 유념하여야 한다.

1. 고인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거주자 (Resident)인 경우

고인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거주자 (Resident)인 경우에 상속세가 면제되는 금액은 사망하는 년도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이 달라진다.

년도	2004~5년	2006~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이후
면제금액	150 만불	200 만불	350 만불	상속세 없음	100 만불

현행 세법에 의하면 상기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2010년에 사망하면 전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2011년 후에 사망하면 과세 상속액 (Taxable Estate)이 1 백만 불을 넘으면 상속세를 내게 된다.

앞으로 상속세에 대한 법 개정이 있으리라고 예상되지만, 현재는 현행법에 근거 하여 상속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된다.

고인(2004 년도나 2005 년도에 사망했다고 가정)이 사망 시 총 상속액 (Gross Estate)과 과세 증여액 (Taxable Gifts)의 합계가 면제 금액 (150 만불) 보다 많으면 상속 세금보고 (Estate Tax Return Form 706)를 해야 한다. 총 상속액에는 미국 내에 있는 재산은 물론 한국 등 타국에 있는 재산도 포함된다. 그러나 그 합계가 면제 금액 (150 만불) 이하이면 상속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고인의 사망후 9 개월 이내에 보고를 해야 되나 자동적으로 6 개월간 연장 받을 수 있다.



상속 세금보고에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될 경우, 사망 후 9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세는 고인의 유산 (Estate)에서 부담하게 된다.

만약 부과된 상속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 분에 대하여 상속 관리인 (Executor)이 먼저 책임지고, 상속인 (Heir, Beneficiary)도 상속받은 몫 한도 내에서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국세청 (IRS)에서 상속 세금 보고일 (또는 마감일 중 나중 일자)로 부터 3년 이내에 감사 (Audit)하여 상속에 대한 추정세를 부과할 수 있다. 만약, 상속세금보고 시 상속액 중 25%이상이 보고에서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6년 이내에 국세청에서 감사 (Audit)하여 상속에 대한 추정 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상당한 상속재산이 법적인 소송 중에 있는 등 특별한 사유 (Reasonable Causes)가 있는 때는 국세청에서 사망 후 10년까지 상속 세금보고와 상속세의 납부를 연기하여 줄 수도 있다.

2. 고인이 비거주 외국인 (Nonresident Alien)인 경우

고인이 비 거주 외국인 (Nonresident Alien)인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미국시민권 자 또는 미국거주자 (Resident)인 경우와는 다르게 미국에 놓여 있는 상속재산 중 6만 불까지만 상속세가 면제된다.

고인이 사망 시 미국 내에 있는 총 상속액 (Gross Estate)과 미국 내에서 증여한 과세증여 액 (Taxable Gifts)의 합계가 면제금액 (6만불) 보다 많으면 상속세금보고 (Estate Tax Return Form 706NA)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 합계가 면제금액 (6만불) 이하이면 상속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고인의 사망 후 9개월 이내에 보고를 해야 되나 자동적으로 6개월간 연장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세의 납부는 연장이 되지 않아 사망 후 9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3. 상속받는 배우자가 미국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상속 액이 1백 5십만 불을 훨씬 넘어도, 상속받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 자이면 무제한으로 배우자공제 (Marital Deduction)를 받을 수 있어,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받는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무제한으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상속세를 내게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1) 상속세법에서 인정하는 국내 트러스트인 QDOT (Qualified Domestic Trust “큐탈”이라 부름)을 설정한 후, (2) 상속세금보고 (Estate Tax Return)를 하기 전에 배우자가 받을 상속재산을 본 QDOT (Qualified Domestic Trust)으로 양도하면 (3) 무제한으로 배우자 공제 (Marital Deduction)를

받을 수 있어 상속세를 안 내게 될 수도 있다.

QDOT (Qualified Domestic Trust)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한번 이를 선택하면 취소할 수 없다. (2) 최소한 Trustee 중 한 사람은 반드시 미 시민권 자이어야 하고, 상속세를 내야 될 일이 발생할 때 상속 세를 원천징수 (Withholding)할 수 있어야 한다. (3) QDOT 으로 양도된 유산은 배우자가 시민권장이었다면 배우자공제 (Marital Deduction)를 받을 수 있는 재산이어야 한다. (4) 나중에 상속세를 확실히 국세청에서 추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후속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1) 앞에서 언급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3) 배우자에게 QDOT 에 있는 재산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제외)을 지급하게 되면, 상속세가 추징된다. 상속세가 추징될 때, 첫 번 배우자가 사망할 때 적용된 상속세율로 상속세를 계산하여 납부하게 된다.

QDOT (Qualified Domestic Trust)을 활용하면, 배우자 공제를 받으나, 그것을 매년 관리하고 보고해야 되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배우자가 영주권자인 경우, 하루라도 먼저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여 획득하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4. 세금면제신탁(Tax Exemption Trust)

부부인 경우 첫 번째 사망한 배우자의 유산을 상속받은 배우자가 나중에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 본인의 재산은 물론, 전에 첫 번째 배우자로부터 받은 유산도 함께 총 상속액수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상속재산 (생명보험금도 포함)이 상당히 많은 부부의 경우, Living Trust (생전신탁)에서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세금면제신탁 (Tax Exemption Trust) 설정 조항을 흔히 첨부하게 된다. (앞의 리빙 트러스트 도표의 마지막 B Trust 참조)

이는 상속세가 면제되는 금액 (2004 년과 2005 년도는 1 백 5 십만 불)은 개 개인마다 적용되므로, 첫 번째 배우자가 사망할 때, 모두 배우자에게 상속하지 않고, 상속세 가 면제되는 금액한도에서 세금면제신탁 (Tax Exemption Trust)을 설립하여 별도로 상속시키는 방법이다. 이를 흔히 세금을 피한다 하여 Bypass Trust (또는 줄여서 B Trust)라고도 하고, 가족을 위한 신탁이라 하여 Family Trust 라고도 부른다.

따라서,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부부가 2004 년도나 2005 년도에 사망하는 경우, 부부 각자 1 백 5 십만불 즉, 부부 합하여 3 백만 불까지 상속세 없이 자녀 등 상속인 에게 상속시킬 수 있게 된다.

5. 어떻게 생명보험을 가입할 것인가?

사망 시 현금이 생기는 생명보험과 상속세

한 가정의 상속계획을 세울 때, 생명보험은 큰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보험가입자 (Insured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회사로부터 큰 목돈인 생명보험금 (Life Insurance Proceeds) 을 수혜자 (Beneficiary)가 현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은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 가입자가 사망 시 보험증서에서 규정 한 생명 보험금을 수혜자에게 지급한다는 보험회사와의 계약이다. 보험증서에서 누구를 수혜자로 지정하였고, 누가 증서의 소유자(Owner)인가에 따라, 생명 보험금이 보험 가입자(Insured) 의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도 있고, 제외될 수도 있다.

생명보험의 수혜자를 보험 가입자의 상속재산 (Estate)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보험 가입자인 고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또한, 보험 가입자인 고인이 생명 보험증서의 소유주 (Owner)이거나, 소유한 것 처럼 권리 (Incidents of Ownership)를 행사할 수 있으면, 수혜자가 누구든지 생명보험금은 고인의 총 상속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계산하게 된다.

수혜자를 변경할 수 있거나, 보험을 해약이나 취소할 수 있거나, 보험을 양도할 수 있거나, 양도를 취소할 수 있거나, 보험을 담보로 잡힐 수 있거나, 또는 보험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 권한 중 하나라도 행사할 수 있으면, 소유권 (Incidents of Ownership)을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보험 가입자의 상속 액이 생명 보험금을 포함하여 1 백 5 십만 불 이하 (2004 년과 2005 년에 사망 시)이면 상속세를 내지 않으므로, 상속세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세울 필요는 없다고 본다.

또한 부부인 경우, 수혜자인 배우자가 미 시민권 자이면 생명보험금이 총 상속액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당장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된다. 그러나, 생명보험금을 받은 배우자가 미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상속세를 내지 않으려고 앞에서 언급한 QDOT 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두 번째 배우자가 나중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배우자 사망 시 받은 생명 보험금을 포함한 모든 재산이 두 번째 배우자의 총 상속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재산이 1 백 5 십만 불을 훨씬 초과하고 두 번째 배우자의 안락한 노후 생활이 보장되는



경우, 생명 보험금이 어느 배우자의 상속재산에도 포함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게 하려면, 보험가입자가 소유주나 수혜자가 아니어야 하며, 생명보험에 대한 소유권 (Incidents of Ownership)을 하나라도 행사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보험증서가 계약 되어야 한다.

보험 가입자의 배우자를 보험증서의 소유주나 수혜자로 지정한다 하더라도, 캘리포니아 주는 Community Property (부부공유재산)주 이므로, 부부의 재산은 반반씩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생명보험금의 50%는 보험가입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증서가 배우자의 별도재산 (Separate Property)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생명보험금은 보험가입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보험증서의 소유주와 수혜자가 보험가입자나 배우자가 아닌 제 3 자 (자녀 또는 생명보험신탁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 등등) 로 되어 있으면, 생명 보험금은 보험가입자 부부의 상속재산에서 영원히 제외될 수도 있게 된다.

만약, 현재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보험소유주가 생명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생명보험증서를 제 3 자(자녀 또는 생명보험신탁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 등등)에게 양도하려 한다면, 양도한 지 3년이 지난 후에 사망하는 경우에만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생명보험을 제 3 자에게 양도 하였다 하더라도, 양도 후 3년 이내에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상속세 문제로 양도하고자 하면 미루지 말고 하루라도 일찍 양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수혜자가 미성년 (18 세 미만) 자녀인 경우, 미성년 자녀는 재산을 소유할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가 성인이 될 때까지 생명보험금을 관리하거나, 또는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Guardian)에게 지급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부나 모가 후견인이 되지만, 부모가 없는 경우 법원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부모의 유언장에서 미리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을 지정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또한, 미성년 자녀는 재산을 법적으로 소유할 수 없으므로, 생명보험도 소유할 수 없다. 이 경우 미성년 자녀를 위한 생명보험트러스트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 를 설정 한 후, 생명보험증서를 양도하거나 새로 가입할 수 도 있다.

6. 생명보험신탁(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

보험증서의 소유주와 수혜자가 보험가입자나 배우자가 아닌 제 3 자 (자녀 또는 생명 보험신탁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 등등) 로 되어 있으면,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앞에서 살펴 보았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 (Minor)이거나 또는 성인이라 하더라도



보험가입자가 구상한 상속계획에 반하여 소유권을 행사 (보험해약을 한다던 지, 돈을 빌린다더니 등)할 수 도 있게 된다.

따라서, 상속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생명보험신탁(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 을 활용하게 된다.

보험 가입자가 신탁인 (Trustor)으로서 생명보험신탁을 설정한 후, 먼저 기존의 생명보험을 생명 보험신탁으로 양도하게 된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생명보험을 양도한 지 3년이 지난 후 사망해야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만약, 상속계획상 생명보험금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생명보험신탁에서 새로 생명보험을 신청하여 생명보험신탁 자체가 생명보험증서의 소유주 (Owner)와 수혜자 (Beneficiary)가 되게 한다.

생명보험신탁 규정에서 보험가입자나 신탁인 (Trustor)이 생명보험신탁이 소유한 생명보험에 대하여 소유권 (Incidents of Ownership)을 하나라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면, 보험가입자나 신탁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조항이 없도록 생명보험신탁 문서를 정확히 작성할 필요가 있다.

생명 보험신탁은 한번 설정되면 취소할 수 없는 Irrevocable Trust 이므로, 생명 보험신탁을 관리할 신탁관리인(Trustee)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관리할 능력과 소양 등을 검토하여 신탁관리인(Trustee)을 신중히 선임 하여야 한다.

생명보험신탁(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에서 신탁관리인(Trustee)이 해야 할 일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신탁관리인(Trustee)은 생명보험의 법적인 소유주가 되어, 먼저 국세청 (IRS)에 납세자번호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하여 획득한 후, 은행에 생명보험신탁 관리에 필요한 은행계좌를 개설한다.

신탁인로부터 보험료로 총당할 기금을 양도받아 이를 은행계좌에 입금시키게 된다. 이 때 신탁인이 증여한 기금이 매년 증여세 (Gift Tax)의 공제 (2004년에는 \$11,000)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하여, 수혜자에게 매년 \$5,000 또는 트러스트 재산의 5% 중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문서로 통보해야 된다. 통보한다 하더라도 자녀등 수혜자는 상속계획상 (만약 돈을 받으면 보험료를 낼 수 없어 생명보험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돈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 수혜자에게 통보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탁관리인 (Trustee)이 해당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지급하여 생명보험이 계속 유효하도록 한다.



보험가입자가 사망하면, 보험회사로부터 생명보험금 (Death Benefit)을 신탁관리인 (Trustee)이 수령하여 생명보험신탁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일반적으로 신탁관리인 (Trustee)은 생명보험신탁에 명시된 권한에 의거하여, 신탁인의 상속재산 (Estate)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Loan) 또는, 상속재산 (Estate)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생명 보험 신탁규정에 의거하여, 수혜자에게 소득과 재산을 분배한 후, 생명보험 신탁이 종결되게 된다.

생명 보험 신탁(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에 대하여 국세청 (IRS)에서 감사 (Audit)를 할 확률이 높으므로, 보험가입자나 신탁인 (Trustor)이 생명보험에 대하여 소유권 (Incidents of Ownership)을 하나라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이 없도록 생명 보험 신탁 문서를 정확히 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탁 관리인 (Trustee)은 세법 규정에 맞게 기금관리를 분명히 하고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상속세금보고서 (Estate Tax Return)를 국세청에 접수하고 감사를 받을 때까지 잘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

참고로, 생명보험 가입자로 되어 있거나 또는 생명 보험증서를 소유한 고인이 상속세금보고 (Estate Tax Return)를 해야 되는 경우, 반드시 각 보험증서마다 보험 회사가 작성한 생명보험 명세서 (Life Insurance Statement Form 712)를 첨부하여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 맺음말

앞에서 캘리포니아 주에서의 상속절차와 그와 관련된 법률과 세법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상속계획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상속계획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작업이므로 생각하기도 싫어할 수도 있다. 한편, 본인이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총 정리해야 되는 것이므로 이것 저것을 고려하다 보니, 생각하기에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당장 사망하는 것도 아닌데 하면서, 오늘 급한 일에 밀려 뒷전으로 밀리고 상속계획을 차일피일 미루기도 한다. 그러나, 태어나는 것에는 순서가 있지만, 죽음에는 순서가 없듯이, 아무도 언제 어떻게 사망할 지는 모른다.

한번 시간을 내어 상속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생각하는 것보다 쉽게 상속계획을 준비할 수 있다. 일단 한번 준비하고 나면, 보다 모든 것이 잘 정리 되고 한눈에 들어 오게 되는 것 또한 상속계획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배우자, 자녀, 가족 등 사랑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남겨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본인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음미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상속계획은 개개인마다 그리고 가정마다 다르게 적용되므로, 구체적인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상속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기 바란다. 일반적으로 상속계획을 세워준 변호사가 그 가정의 변호사 (Family Lawyer)가 되고, 상속계획을 도와준 재정 상담가가 그 가정의 재정 상담가가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캘리포니아 주에서의 재산 소유 개념

캘리포니아 주에서 재산을 소유하는 개념에는 부부가 함께 소유하는 Community Property (부부 공유재산) 개념과 부부가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Separate Property (별도 재산) 개념이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 개념들에 의하여 상속이 되므로, 이를 먼저 검토해보기로 한다.

■ Community Property (부부공유재산)

캘리포니아 주는 결혼기간 중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면서 부부가 벌어들인 소득과 모은 재산에 대하여는 부부가 각각 반반씩 소유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Community Property 주 (State)이다. 재산에 대한 명의가 부부 중 한 사람의 것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부가 반반씩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결혼기간 중 부부 중 한 사람만 일하여 재산을 모았다 하더라도 역시 부부가 반반씩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결혼기간 중 캘리포니아주가 아닌 타 주(State)나 한국 등 타국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재산은 Quasi-Community Property (준 부부 공유재산)이라 하고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법적으로 Community Property 처럼 간주된다.

■ Separate Property (별도재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Separate Property (별도재산)이라 한다.

개인에는 결혼하지 않은 독신자 (Single), 이혼한 자 (Divorced Person)나 배우자를 사별한 자 (Widowed Person) 등이 이에 포함된다.

특히, 결혼한 자 (a Married person)가 현 배우자와 결혼하기 전에 취득하였거나, 현 배우자와 결혼한 후에 부모나 제 3 자로부터 증여(Gift)를 받았거나 상속을 받아 취득한 재산은 부부공동 재산이 아닌 Separate Property (별도재산)으로 소유할 수 있다.

유언장 (Will 유언, 유언서, 유서)

개인이 소유한 재산 중 사망 시 법원의 상속절차를 밟아야 되는 유산이 있게 된다. 앞에서 살펴본 법이 정한 상속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대로 유산을 상속 주고 싶으면, 유언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을 유언자 (Testator)라 한다. 18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건전한 정신 (Sound Mind)을 가진 개인은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유언장에서 처분 할 수 있는 유언자의 재산은 개인이 소유한 Separate Property (별도재산) 전부이다. 만약 유언자가 결혼한 경우에는, 이외에 Community Property (부부공유재산) 의 반 (1/2)과 Quasi-Community Property (준 부부 공유재산)의 반 (1/2)도 유산에 포함된다.

유언장에서 유산을 받도록 지정된 사람이나 단체를 수유자 (受遺者 Beneficiary, Devisee)라 한다. 수유자는 개인 (Individual), 법인 (Corporation), 협회, 정부기관이나 국가가 될 수 있다.

유언장에서 지정된 수유자가 유산을 받으려면, 유언장에서 특별히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한, 유언자 보다 120시간 (만 5일)만큼 더 오래 살아야 한다. 단, 이 규정으로 인하여 유산이 주정부에 귀속 (Escheat) 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언장에서 유언내용을 집행하도록 유언자가 위임한 사람을 유언집행인(Executor) 이라 한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법원에서 유언집행인을 상속절차를 관리할 상속대리인 (Personal Representative)으로 선임하게 된다.

자녀 등 수유자가 미성년자 (Minor)인 경우, 성인 (Major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8세)이 될 때까지 양육하도록 유언자가 위임한 사람을 Guardian (후견인)이라 한다.

자녀 등 수유자가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나이인 경우, 유언자가 정한 특정한 나이 (25, 30세, 35세 등)가 될 때까지 유산 받은 재산을 대신 관리하도록 위임한 사람을 Custodian (재산 관리인)이라 한다.

결혼한 유언자의 유산이 상속세가 면제되는 1백5십만 불 (2004년과 2005년에 사망 시)보다 많을 경우, 상속세를 줄이기 위하여 사망 후에 트러스트 (Testamentary Trust) 가 설정되도록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Trust로 양도된 재산을 관리하고 상속을 분할하도록 위임 받은 사람을 Trustee (신탁 관리인)이라 한다.

유언장의 종류

유언장은 어떻게 작성이 되었나 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증인된 유언장 (Witnessed Will)

유언장은 (1) 반드시 문서화되어야 하고 (2) 유언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3) 유언자가 서명할 때 최소한 2 사람 성인이 증인을 서야 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유언자를 위하여 변호사가 준비한 유언장(Lawyer Drafted Will)이 이에 속한다. 유언자의 재산이 그리 많지 않거나 또는 유언의 내용이 간단한 경우, 상속 법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캘리포니아 주 법정 유언장 (California Statutory Will)을 사용 하면 변호사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 자필 유언장 (Holographic Will)

유언자의 유언의 의도가 있는 한, 유언자의 친필이거나 컴퓨터 등 인쇄된 양식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1) 서명과 주요 조항들 (Material Provisions) 은 반드시 유언자의 친필 (Handwriting)이어야 하며 (2) 작성 일자를 명시해야 한다.

■ 국제적 유언장(International Will)

국제 유언장법 (Uniform International Wills Act)에 따라, 유언자가 한국어 등 외국어로 작성한 유언장을 (1)유언자가 두 사람 성인의 증인과 함께 가주 변호사 앞에서 본인의 유언장이라 선언 (Declare)하고 (2)이에 대한 확인서(Certificate)를 가주 변호사가 작성하면 효력이 있게 된다. 또한 가주 정부에 이를 등록 (Register) 할 수 도 있다.

유언장의 효력 - 항상 최근에 작성한 것이 우선

유언자가 몇 번에 걸쳐서 유언장을 여러 번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항상 최근에 작성한 것이 앞서 작성한 유언장보다 우선한다. 일반적으로 새로 유언장을 작성할 때, 앞서 작성한 유언장을 무효화시킨다는 규정을 삽입하여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유언자는 유언 보충서(Codicil)를 작성하여 유언장 내용을 고칠 수도 있다.

협박 (Duress), 강박 (Menace), 사기 (Fraud) 또는 부적절한 영향력 (Undue Influence) 등 행위에 의하여, 유언장이 작성되거나 기존의 유언장 내용이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게 된다.



특히, 유언장을 작성한 후, 이혼을 하거나 결혼이 무효 (Annulment) 가 되었지만,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거나 수정하지 않아 전(前) 배우자 (Former Spouse) 에 관한 조항이 그대로 있는 채 유언장을 남기고 사망할 수 도 있다. 이 경우에는 (1) 유언장에서 명시한 전 배우자에게 주기로 한 유산분배는 무효되며, (2) 전 배우자를 Executor (유언 집행인), Trustee (신탁관리인), Guardian (후견인) 또는 Custodian (재산 관리인)으로 지명한 내용도 무효가 된다. 그리고 (3) 유언장이 집행될 때, 전 배우자가 유언자 보다 먼저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된다.

상속절차의 흐름표

상속절차를 밟아야 되는 총 유산이 1 십만불 이하이면 복잡한 상속절차를 피하고 간단한 문서 (Summary Probate)로 몇 주 만에 상속수속을 마칠 수도 있다.

그러나, 상속절차를 밟아야 되는 총 유산이 1 십만 불 보다 많으면 (즉, 고인이 주택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대부분 해당됨), 법원을 통하여 Probate Process 라는 상속절차를 밟게 된다.

법원에 상속절차를 밟기 위하여 제시되는 서류와 행위를 중심으로 상속절차의 흐름 표를 작성하면 별표와 같다. 상속절차의 흐름 표에서 보는 것처럼 상속이 시작하여 끝날 때까지 보통 1 년에서 2 년이 걸리게 된다. 만약 상속에 관하여 이해 당사자간에 분쟁이 있어 법정 소송이라도 있게 되면, 2 년보다 더 걸릴 수도 있게 된다.

1. 상속의 개시

명의 변경이 가능한 재산	명의 변경이 불가능한 재산
Petition for Probate (상속 청원서)의 접수	사망 후 아무 때나
유언장 및 Codicils (유언 보충서) 첨부	
Petition to Administer Estate (상속관리청원서) 신문공고 및 우송	Hearing 15 일전 3 번 이상
Order for Probate (상속 결정서) 의 접수	법원서 결정
Letters (상속 대리인 임명장)과 Duties and Liabilities of Personal Representative (상속 대리인 의무와 책임)의 접수	상속결정서 와 함께

법원에서 Letters (상속지침서)를 Issue 함	상기 서류를 검토 후
-------------------------------	-------------

2. 상속의 관리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신청	임명장 발급 직후
Director of Health Services 에 사망통보 (고인이나 그 배우자가 Medi-Cal 을 받은 경우)	사망 후 90 일내
Estate Bank Account 열음	임명장 발급 직후
Estate 의 Income Tax Return 준비	임명장 발급 후
Inventory 와 Appraisal 접수 현금이 아닌 모든 부동산, 동산은 Probate Referee 가	임명장 발급 후



감정하고, 감정가의 비율로 비용을 받는다.	
부동산 명의 변경서를 해당 County Assessor 에 접수	Inventory 접수 시
Creditor (채권자) 에게 통보	4 개월 이내
Federal Estate Tax Return (상속세금보고서)의 접수	사망 후 9 개월 이내

3. 상속의 종결

Petition for Final Distribution (최종 분배 청원서)의 접수	4 개월- 1 년 걸림 상속세보고서 18 개월
Notice of Hearing 을 Beneficiary (수혜자)에게 우송	Hearing 15 일 이내
Hearing : 이해 당사자 및 그의 변호사	
Order for Final Distribution (최종 분배 판결)의 접수	법원 사정에 따라
	결정
Transfer Assets (재산양도) 및 상속인으로부터 영수증 수령	결정서 서명 후
Affidavit for Final Discharge (최종이행진술서) 및 영수증 의 접수	재산분배 후 상속절차 종결됨

캘리포니아 주에서의 Probate Process (유언검증절차)

고인이 소유한 재산 중 사망 시 법원의 상속절차를 밟아야 되는 유산이 있으면, 유언장이 있든 없든 Probate Process (유언 검증절차)를 밟아야 한다.

즉, Probate Process는 고인 (Decedent 피상속인)의 유산 (Estate)을 상속인이나 채권자 등 이해 관계자에게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처분할 때, 고인의 유언에 따라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검증하고 그와 관련된 일체의 상속절차를 법원이 감독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상속절차를 관장하는 재판권은 Superior Court 에 있다.

고인이 사망 시 캘리포니아주의 거주자 (Resident) 이면, 고인이 거주한 (Domiciled) County의 법원이 담당하며, 비거주자 (Nonresident) 인 경우에는 고인의 유산 중 부동산이 놓여있는 County의 법원이 담당하게 된다.

특히, 부동산이 상속될 때는 부동산이 있는 주 (State)나 국가 (한국 등)의 상속 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이 상속절차를 밟아야 됨을 유념해야 한다.

먼저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고인을 대리하여 상속절차를 관리할 상속 대리인 (Personal Representative)을 선임하게 된다.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인이 유언장 (Will)이 있는 경우 유언장에서 지명한 유언 집행인 (Executor)을 선임하고,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 관리인 (Administrator)을 법원이 선임하게 된다.

Probate Process (법원 유언검증/상속 과정)에 드는 비용

상속절차를 밟게 되면, 법원의 수속비용, 변호사 수임료, 감정사 비용 등 상속수속과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하며, 이 비용은 고인의 유산에서 지급된다.

이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은 상속대리인과 변호사의 수임료가 된다. 캘리포니아주의 상속 법에는 이에 대한 최고 수임료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변호사의 수임료는 서로 합의하여 대부분 이 한도보다 적게 결정되지만, 법이 정한 한도액을 참고하기 바란다.

法定최고수임료	총유산액	수임료
4% on the first \$100,000	\$100,000	\$4,000
3% on the next \$100,000	\$200,000	\$7,000
2% on the next \$800,000	\$1,000,000	\$23,000
1% on the next \$9,000,000	\$10,000,000	\$113,000
.5% on the next \$15,000,000	\$25,000,000	\$188,000
By Court above \$25,000,000		

수임료를 계산할 때, 유산의 부채 (Debts)를 뺀 순유산액 (Net Estate)이 아닌 총 유산액 (Gross Estate)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사례) 고인의 주택 (시가: \$500,000 모기지: \$400,000 순자산 (Equity): \$100,000)만 상속절차를 밟는 경우, 이에 대한 상속수속 최대 변호사 수임료는 순유산액 \$100,000 이 아닌 총 유산액 \$500,000 대한 수임료로 계산하여 \$13,000 이 되게 된다.

유언장 없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나의 재산이 상속되나?

법이 정한 상속 (Intestate Succession)에 따르게 됨.

고인의 유산 중 상속절차를 밟아야 되는 재산은 모두 캘리포니아 주 상속 법 (Probate Code) 조항에 의하여 상속 분할하게 된다.

고인이 유언장 (Will)없이 사망하였거나, 또는 유언장이 있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주 상속 법 (Probate Code) 조항에 따라 고인의 유산을 상속 분할하게 된다. 이를 무 유언승계 (Intestate Succession) 조항에 의한 법정상속이라 한다.

■ 고인 (Decedent)이 사망 시 결혼한 경우

고인의 유산은 부부가 함께 공유한 Community Property 의 50%, Quasi- Community Property (준 부부공동재산)의 50% 그리고 고인의 Separate Property 의 100%로 이루어진다.

고인의 몫인 Community Property 의 50%와 Quasi-Community Property 의 50%는 모두 배우자에게 상속된다.

고인의 몫인 Separate Property (별도재산)은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상속된다.

1. 고인에게 자녀, 부모, 형제, 자매 또는 형제자매의 후손이 없는 경우에는 모두 배우자에게 상속된다.
2. 고인에게 한 자녀 또는 그 자녀의 후손이 있는 경우에는 1/2 은 배우자에게 그리고 나머지 1/2 은 한 자녀 또는 그 자녀의 후손에게 상속된다.
만약 한 자녀가 먼저 사망하여 손자 손녀를 둔 경우에는 자녀의 몫은 손자 손녀에게 균등히 상속된다.
3. 고인에게 자녀는 없지만 부모나 그들의 후손이 있는 경우에는 1/2 은 배우자에게 나머지 1/2 은 부모, 부나 모, 또는 그들의 후손에게 상속된다.
4. 고인에게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3 은 배우자에게 나머지 2/3 는 두명 이상의 자녀에게 균등히 상속된다.
5. 고인에게 한 자녀와 미리 사망한 자녀의 후손이 있는 경우에는 1/3 은 배우자에게 나머지 2/3 는 한 자녀와 미리 사망한 자녀의 후손에게 상속된다.



6. 고인에게 미리 사망한 두명 이상의 자녀들의 후손이 있는 경우에는 1/3 은 배우자 에게 나머지 2/3 는 미리 사망한 두명 이상의 자녀들의 후손에게 상속된다.

■ 고인 (Decedent)이 사망 시 결혼하지 않은 경우

고인이 사망 시 결혼하지 않은 경우 (독신자, 이혼한 자, 배우자를 사별한 자 등)에는 고인의 모든 유산은 Separate Property (별도재산)이 된다.

고인의 유산은 다음과 같이 상속된다.

1. 고인의 직계비속 (후손)이 있는 경우, 모두 직계비속 (후손) 에게 상속된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촌수로서 생존한 사람 (예: 자녀)과 후손 (예: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을 남겼으나 이미 사망한 사람 (예: 사망한 자녀)도 포함하여 균등하게 분할하고, 사망한 사람의 몫은 그 후손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분할한다. (상속법 240 조 적용)
2. 고인에게 생존하는 후손이 없는 경우에는, 고인의 부와 모에게 균등히 분할하여 상속된다.
3. 고인에게 생존하는 부나 모가 없는 경우에는, 고인의 부와 모의 후손에게 상속 된다. (상속법 240 조 적용)
4. 고인에게 생존하는 부와 모의 후손이 없는 경우에는, 고인의 조부와 조모에게 상속 된다. (상속법 240 조 적용)
5. 고인에게 생존하는 조부와 조모가 없는 경우에는, 조부와 조모의 후손에게 상속 된다. (상속법 240 조 적용)
6. 고인에게 사별한 배우자(Predeceased spouse)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후손에게 상속된다. (상속법 240 조 적용)
7. 고인의 그 다음 가까운 친족 (Next of Kin)에게 상속된다.
8. 고인에게 사별한 배우자 (Predeceased spouse)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부와 모나 그들의 후손에게 상속된다. (상속법 240 조 적용)
9. 상기 해당 상속인이 없는 경우, 고인의 유산은 주정부에 귀속 (Escheat) 된다.